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예규 운영 근거 신설(안 제12조제7항 신설)

- 1) 지방교부세 감액 절차, 기준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규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법령위반사항 제출 의무화 및 감액대상 확인·조사 근거 신설
(안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신설)

- 1) 감액대상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소관부처(서)의 감사결과 등 제출 의무화 및 감액심의 대상의 사후 조치사항 등에 대해 필요시 추가 확인 및 조사 근거 마련

다. 법령위반 채무 등 부당행위, 감액대상 추가
(안 제12조제1항제2의3호, 제2의4호, 제2의5호 신설)

- 1) 법령을 위반하여 지방의회 의결 없이 채무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교부세 감액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9. 27. ~ 11. 6.)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2호의3부터 제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지방자치법」 제21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8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 이행을 보증하거나, 보증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거나, 보증한 내용을 변경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2의4.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2의5.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한 경우: 의

결을 얻지 아니하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하여 지출하거나 권리를 포기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 이내

⑦ 제1항 내지 제6항 및 제12조의3 내지 제12조의5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주무부 장관의 조사결과 제출) ① 영 제12조제1항 각호에 따른 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을 위한 조사결과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무부 장관은 조사대상, 위반한 법령의 종류와 그 사유, 지나치게 많은 경비의 지출 또는 징수를 게을리한 금액 및 산정내역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의 장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0조에 따른 부정수급 점검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12조 제1항 제1의3호 내지 제1의8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령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위반 사항 및 지출 금액 등 세부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등은 매년 6월 30일까지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동일한 내용이 통보되어야 한다.

제12조의4(감사시행기관의 감사결과 제출) ① 영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1조, 185조제1항 또는 제190조에 따른 감사시행기관의 장은 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을 위한 감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중 상반기 감사결과는 12월 31일까지, 하반기 감사결과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5(확인 및 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의 운영을 위하여 통보받은 법령위반 사항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등과 합동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 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 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 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 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 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2의2. (생 략) <u><신 설></u>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 ----- ----- ----- ----- ----- -----. 1. ~ 2의2. (현행과 같음) <u>2의3. 「지방재정법」 제13조제</u> <u>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의</u> <u>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u> <u>채무 이행을 보증하거나, 보증</u> <u>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의결</u> <u>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의 이</u> <u>행을 보증하거나, 보증한 내용</u> <u>을 변경하여 지출한 금액 이</u> <u>내</u> <u>2의4. 「지방재정법」 제44조에</u> <u>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u> <u>아니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한</u> <u>경우: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u> <u>채무부담행위를 하여 지출한</u> <u>금액 이내</u>
<u><신 설></u>	

<신 설>

3. (생 략)

4.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을 위반하여 세출예산에서 정
한 각 정책사업 간에 경비를
서로 이용한 경우: 예산의 이
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5.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
에 따른 예산의 전용(轉用) 범
위를 위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예산의 전용 범위를 위
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6. ~ 8. (생 략)

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
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

2의5. 「지방자치법」 제47조제
1항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하거나 권리
를 포기한 경우: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
을 하여 지출하거나 권리를
포기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
이내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
1항-----

5.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

6. ~ 8. (현행과 같음)

9. -----
----- 제4항-----

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
·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
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
·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
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0. 그 밖에 「감사원법」 제22
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
사결과나 「지방자치법」 제2
1조 또는 제190조에 따른 주
무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
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
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
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② ~ ⑥ (생략)

<신설>

<신설>

10. -----

----- 「지방자치법」 제21
조, 제185조제1항 -----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내지 제6항 및 제12조
의3 내지 제12조의5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3(주무부장관의 조사결

과 제출) ①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을 위한 조사결과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무부장관은 조사대상, 위반한 법령의 종류와 그 사유, 지나치게 많은 경비의 지출 또는 징수를 게을리한 금액 및 산정내역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의 장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0조에 따른 부정수급 점검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12조 제1항 제1의3호 내지 제1의8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령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위반 사항 및 지출 금액 등 세부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법령을

<신 설>

<신 설>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은 매년 6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동일한 내용이 통보되어야 한다.

제12조의4(감사시행기관의 감사 결과 제출) ① 영 제12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1조, 185조제1항 또는 제190조에 따른 감사시행기관의 장은 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을 위한 감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중 상반기 감사결과는 12월 31일까지, 하반기 감사결과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5(확인 및 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의 운영을 위하여 통보받은
법령위반 사항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등과 합동으로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연 락 처	(044) 205 - 3764